울산광역사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장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**736**

제출년월일: 2009. 11.

제 출 자:중구청장

1. 개정이유

국민권익위원회의 정부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권고에 따라 제증명 등 수료 징수방법의 개선 및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지방세납세증 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방법 개선(안 제5조)

- 징수방법 : 현금징수 ⇒ 현금 또는 신용카드
- 무인민원증명발급기는 현행대로 현금 징수
- 나. 「지방세법 시행규칙」 개정에 따라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 무료(안 별표1)
 - [별표 1]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 부분 삭제
- 다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 정비

3. 근거법규

- 가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7조
- 나. 「지방자치법」제139조제1항
- 다. 「지방세법 시행규칙」제14조
- 4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- 5. 참고사항: 입법예고 의견 없음(2009. 10. 19 ~ 11. 9)

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5조제2항 중 "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금계기 및 전자계기에 의한"을 "제5조제1항에 따라 요금계기에 따른"으로, "현금으로"를 "현금 또는 신용 카드로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③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.
- 별표 **1**의 제증명 등 수수료 제1호마목 중 (5)지방세 납세증명서 수수료 항목을 삭제한다.

부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에 관한 적용례)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징수방법) ① (생 략) ② 「울산광역시중구 수입증지 조례」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금계기 및 전자계기에 의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.	제5조(징수방법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요금계기에 따른현금 또는 신용카드로
<신 설>	③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 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 금으로 징수한다.
[별표 1] 제증명 등 수수료(제3조 관련)	[별표 1] 제증명 등 수수료(제3조 관련)
구 분 기준 요액 비고 1. 증명 등 가. ~라.(생략) 기준 의 <th>구 분 기준 요액 비고 1. 증명 등 가.∼라.(현행과 같음) 마. 지방세에 관한 증명 (1)∼(4)(현행과 같음) 소삭 제> (5)(현행 제6호와 같음) 바.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</th>	구 분 기준 요액 비고 1. 증명 등 가.∼라.(현행과 같음) 마. 지방세에 관한 증명 (1)∼(4)(현행과 같음) 소삭 제> (5)(현행 제6호와 같음) 바.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

의 안 심 사 보 고 서

(의안번호 736)

- 1. 의안명 :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
- 2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일 자 : 2009. 11. 11(수)

나. 제 출 자 : 중구청장

다. 위원회 회부 : 2009. 11. 16(월)

라. 위원회 상정 : 2009. 11. 30(월)

- 3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총무국장)
 - O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부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권고에 따라
 - O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방법의 개선 및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가.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방법 개선(안 제5조)

- 징수방법 : 현금징수 ⇒ 현금 또는 신용카드
- 무인민원증명발급기는 현행대로 현금 징수
- 나. 「지방세법 시행규칙」 개정에 따라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 무료(안 별표)
 - [별표 1]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 부분 삭제
- 다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 정비

5. 관련법규

- 가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7조
- 나.「지방자치법」제139조제1항
- 다.「지방세법 시행규칙」제14조

6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홍성춘)

가. 본 개정 조례안은

-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부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권고에 따라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방법의 개선과,
- 개정된 상위법령인「지방세법 시행규칙」에 따라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으로

나. 주요 개정내용으로는

- 현재 제증명 등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하던 것을 무인민원
 증명발급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도 징수 가능 토록 하였으며,
- 또한,「지방세법 시행규칙」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납세증명 서 발급 수수료를 현재 800원에서 무료로 하는 개정 내용을 담고 있음.
- 다. 이와같이 본 개정 조례안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와 상위법령의 개정 에 따른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됨.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